

#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4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9. 25.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평창군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등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업무 전문화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마케팅, 스포츠대회, 전지훈련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다.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 규정(안 제6조)
- 라.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1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5-1265호, 올림픽체육과-8077(2025. 8. 22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3197(2025. 8. 25.)호]
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3197(2025. 8. 2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반영[가족복지과-32004(2025. 8. 28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4602(2025. 9. 16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4834(2025. 9. 19.)호]

##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대회”란 평창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.
2. “전지훈련”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·향상하기 위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이외 지역의 프로구단, 실업팀, 학교, 단체 등이 군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스포츠마케팅”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·지원을 통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·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, 인권 등의 보호를

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## **제4조(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
2.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
3.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관리 계획
4.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홍보
5.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#### **제5조(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2.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#### **제6조(전지훈련 선수단 지원)**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  2.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
  3. 선수단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
  4.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
  5.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군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9조(준용)** ① 위원회의 운영,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를 따른다.

② 위탁사무의 운영, 집행,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①~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 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[조례 제2850호]

### 제4조(대상사무)

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생략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사무위탁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업무 위탁금 발생

-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비(숙식비, 체험활동비 등)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운영비

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

제6조(전지훈련 선수단 지원)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

## 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위탁사무의 범위는 보조사업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사무 중 일부로 함 ※ 추진방식 변경(보조사업→위탁사무)

나. 추계 결과

○ 26년 예산소요액

구 분	사업명	소요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	1,698,300	
대회 개최	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외 25개 대회	1,318,000	
전지훈련 유 치	전지훈련팀 유치 지원	350,000	
	전지훈련 유치 운영비	30,000	

다. 재원조달 방안 : 평창군 자체수입(군비) : 1,698,300천원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
연락처	(033)330-2018

## 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민간위탁금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재원 조달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	8,798,300
의 존 재 원	소 계					
자 체 수 입	보조금	1,698,300	1,750,000	1,750,000	1,800,000	1,800,000
	지방교부세					
자 기 금	소 계					
공기업	지방세					
특별회계	세외수입					
민간자본	지방교부세					
해외자본	지방채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기금					